2026. 10.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승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115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김승일, 정경원, 장민우 의원(3명)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다.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협의체 회의,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 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통합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입법예고 : 여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련법령발췌서

라.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바. 전북특별자치도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현황

사. 타 시·군 조례 예시

아. 참고자료(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복지부 가이드라인)

자. 현행 조례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김제시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

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제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의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

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김제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김제시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을 따른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통합지원 기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

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 제9조(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 지급

○ 제17조(교육 및 홍보)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조문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정내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사업비	610,000	640,000	670,000	700,000	730,000	3,350,000
연계체계 구축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600,000	630,000	660,000	690,000	720,000	3,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지방비 확보

3. 작성자 : 통합돌봄TF팀장 강병찬

경로장애인과장 박선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96,500	416,000	435,500	455,000	474,500	2,177,500
국비		305,000	320,000	335,000	350,000	365,000	1,675,000
도비		91,500	96,000	100,500	105,000	109,500	502,500
세 출		610,000	640,000	670,000	700,000	730,000	3,350,000
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사업비		600,000	630,000	660,000	690,000	720,000	3,300,000
재원 조달		610,000	640,000	670,000	700,000	730,000	3,350,000
의존 재원	소 계	396,500	416,000	435,500	455,000	474,500	2,177,500
	보조금	396,500	416,000	435,500	455,000	474,500	2,177,500
자체 수입	소 계	213,500	224,000	234,500	245,000	255,500	1,172,500
	시 비	213,500	224,000	234,500	245,000	255,500	1,172,500

□ 관련 법령 발췌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통합돌봄정책과) 044-202-3584, 35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타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10. 2. ~ 2026. 10. 6.(5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5289(2026. 10. 2.)호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권이솜	경제도시전문위원	대체휴무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10. 7. 이영석
협조자	의정팀장 박성용				

시행 의회사무국-5376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3 팩스번호 063-540-2777 / blessrh@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권이솜	경제도시전문위원	김희성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10. 2.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90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3 팩스번호 063-540-2777 / blessrh@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전북특별자치도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제정현황		비고
	여	부	
전북자치도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군 조례 예시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그 밖에 시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남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개정 2025. 12.17.>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주거환경 개선 및 일시적 주거 제공 등 주거 지원사업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7.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개정 2025.12.17.>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9조에 따른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원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지원 정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관련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법인·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 조직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해야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완주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통합지원협의체 등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3.>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6.9.23.>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2차)

2026. 8.

보 건 복 지 부
통 합 돌 봄 지 원 관

돌봄통합지원 조례 가이드라인 개정수요에 대한 검토 안내

구분	내용	검토
중앙정부	▸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 **반영**(필수사항) * 가이드라인 제11조 참조(14쪽)
	▸ 법률상 위임을 받은 조항은 해당 조례 조항에 위임근거(법률조항) 명시	▸ **반영**(필수사항) * 가이드라인 제1조, 제11조 참조(7, 14쪽)
지방정부	▸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반영**(선택사항) * 전국 공통적용 사항은 아님
	▸ 통합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 사항에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 명시	▸ **반영**(선택사항) * 전국 공통적용 사항은 아님 * 조사사항을 규정한 법 제10조제3항제3호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정할 사항
	▸ 통합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 사항에 '소득조사' 명시 * 본인부담 산정 위해 필요	▸ 미반영 : 조례가 아닌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우선 추진
	▸ 통합돌봄 신청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다른 복지수급을 위해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와 동일할 경우 해당 서류·자료 제출을 면제하거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반영**(선택사항) * 전국 공통적용 사항은 아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5항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시 자체 검토·반영 가능
	▸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다른 돌봄 사업의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갈음	▸ 미반영 : **다수 유관법령·지침 개정 검토 필요**
	▸ 포상규정 신설	▸ **반영**(기타사항)
	▸ "의료·요양 등"을 "보건의료·요양 등"으로 문구 개정	▸ 미반영 : 법률 명칭과 통일 필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통합지원 서비스" →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	▸ **반영**(선택) * 전국 공통적용 사항은 아님 : 법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검토** 가능
기타	▸ 제명에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구 가능 ▸ 법 시행('26.3.27.) 이후 유·무선 문의사항 반영 ▸ 필수/선택 조율 등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 후 정책환경 변화 반영 * (예)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규정 '필수' → '권장' 수정 등	

□ 현행 조례

김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08.08 조례 제17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 보장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통합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돌봄통합의 대상) 돌봄통합의 대상(이하“대상자”라 한다)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돌봄통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대상자의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돌봄통합 지역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돌봄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돌봄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통합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

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돌봄통합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돌봄

통합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회의) ① 시장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대상자의 권리보장과 가정 또는 지역 내에서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국제기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 등과 돌봄통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상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81호, 제정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